

故 속행 씨 유가족에 신속히 배상하고,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 등 노동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29.(목) 경향신문(인터넷), “대법, ‘비닐하우스 사망’ 이주노동자 속행 씨에 “한국정부가 배상” 판결 확정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, 소중한 가족을 잃은 故 속행 씨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배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
- 아울러,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, 계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- 사업주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, 금년 신설된 「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」 사업*을 통해 관련 불법·노후숙소 개선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

* 불법·노후 가설건축물 사용을 근절하고 주거 용도의 일반건축물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,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(2천만원 한도, 210개소)

담당 부서	외국인력담당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	책임자	팀 장	임희종 (044-202-7755)
		담 당	사무관	노대운 (044-202-7739)